

## 「전주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」 일부개정 내용

□ 시행 일 : 2018. 12. 6.

□ 개정 이유
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
-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조정 및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개선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제5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근거 신설  
: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,  
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
- 제7조(위원의 정수)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에 따른 위원정수 조정(2018. 3. 1자 학생수 1천명 미만)
- 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 많은 학부모의 참여 및 현장투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서신투표를 실시하였으나, 학부모들이 서신투표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 하는 사례가 있어 서신투표제 폐지
- 제18조(심의사항) 의견수렴 범위를 학생·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  
- (학부모) 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'학부모 경비부담 사항'에서 학칙의 제·개정,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

개정 전	개정 후
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* 세부 사항 조례 또는 학칙으로 규정	1.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. 교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사항 3.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5. 학교급식 6. 그 밖에 시·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

- (학생)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·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

개정전	개정후
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</li> <li>2.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</li> <li>3. 학교 급식</li> <li>4.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</li> </ol>

## 2. 신·구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,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<u>의하여</u> 전주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	제2조(목적) - - - - - - - - - - 따라 - - - - -
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후 1기(2년)는 쉬어야 한다. <u>&lt;신설&gt;</u>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 <u>&lt;신설&gt;</u>	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<u>학부모위원회 및 교원위원회</u> 의 - - - - - 한 차례만 - - - - -  ② 지역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.
	제5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1.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.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.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현 행	개 정 안
	<p>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p>
제6조(위원의 당연퇴직) 학교운영위원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	제6조(위원의 당연퇴직) 위원이 - - - - - 다만,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한다.
<p>①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일과 전학일, 교원 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 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</p> <p>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단,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.</p>	<p>①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, 전학, 퇴학한 때. 다만, 자녀학생의 - - - - -</p> <p>②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</p> <p>③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- - - - -</p>
제7조(위원의 정수)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.	제7조(위원의 정수) ① 학부모위원 5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3명 - - - - -
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 ① (선출방법)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의할 수 있다.	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 ① - - - - - 다만, 선출 곤란사유가 있을 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<p>1.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서신에 의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.</p> <p>2. 서신투표를 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 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,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,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,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한다.</p>	<p>1. &lt;삭 제&gt;</p> <p>2. 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지역위원 선출) <u>&lt;신 설&gt;</u>	제12조(지역위원 선출) <u>③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/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
제15조(소위원회) <u>&lt;신 설&gt;</u>	제15조(소위원회) <u>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.</u>
제18조(심의사항)  13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 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 ②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 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	제18조(심의사항)  <u>14. - - - - - 동아리 - - - - -</u>  <u>② 제1항제1호, 제5호, 제7호, 제9호, 제14호와 그 밖에 시·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</u>  <u>③ 제1항제1호, 제5호, 제9호와 그 밖에</u>
제26조(건의사항 처리)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26조(건의사항 처리)  <u>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
제28조(운영 경비)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.	제28조(운영 경비)  <u>- - - - -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 - - - - -</u>